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6
----------	-----

2021. 1. 28.(목)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월 12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월 21일

-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재난안전실장 맹경재)

가. 제안이유

-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5조)
-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 신설(안 부칙 제2조)

## 3. 검토보고 요지

###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정진설)

####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효율적으로 피해를 수습하고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해 시·군이 부담한 지원 금액을 구상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66조제4항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같은 법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주민으로 변경하였음.
-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9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던 사항을 안 제5조(지원기

준 등)를 통하여 피해주민의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같은 법 제66조제6항에서는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에게 시·군에서 부담한 지원비용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의 구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군의 과다 구상 청구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2에서 구상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12. 4. ~ '20. 12. 2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해 시·군이 지원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피해자”를 각각 “피해주민”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의2(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군수가 제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재난피해자로부터”를 “피해주민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을 “피해주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피해주민이”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회재난부터 적용한다.



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제5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  
-----.

1. -----  
----- 피해주민  
-----  
-----

2. -----  
-----  
-----  
----- 피해주민 -----  
-----  
-----

제5조(지원기준 등) ① -----  
----- 피해주민 -----  
-----  
-----.

1. (현행과 같음)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 -----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6조 (생략)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등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4조에 따라 지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

·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의2(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

제공자는 시장·군수가 제6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 피해 주민으로부터-----  
-----.

② -----  
피해주민은 -----

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시장·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리·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시장·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2. (생략)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 8. (생략)

제9조 ~ 제12조 (생략)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피해주민이 -----  
-----  
-----  
-----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제8조 -----  
-----  
-----  
-----  
-----.

1.·2. (현행과 같음)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 관련법령 발취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 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신설 2017. 1. 17.>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

1. 생활안정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

1)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

1)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2)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

라.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

마.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

2. 간접지원: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

나. 농업·어업·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라.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

마.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3. 피해수습지원: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 공공시설의 복구

나.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다.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

라.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 ①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사 유

-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 지원 금액은 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 또한, 사회재난의 형태와 시기, 규모 등이 예측 불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작성자 :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 박준규